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중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간은 산입대상에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한다.

제27조제2항 중 “2.5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별표7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22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3년 승진심사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입한다.

1. 2023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2024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
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
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2025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
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
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3/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4. 2026년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
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
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4/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붙임>

■ [별표 7]

군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22조 관련)

군무원 (일반임기제 군무원 포함)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임기제 군무원	전문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연봉상한위 6월을 초과한 기본연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연봉상한위 6월 이하의 기본연봉을 받고 재직한 기간
	한시 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군무원경력관			“가”군 32호봉 이상	“가”군 21호봉 이상 ~31호봉 이하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연봉상한위 6월을 초과한 기본연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연봉상한위 6월 이하의 기본연봉을 받고 재직한 기간
	한시 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 경력관			“가”군 32호봉 이상	“가”군 27호봉 이상 ~31호봉 이하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 찰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중위 소위	준 위	원사 상사	중 사	하 사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2 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9등급	6등급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교 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교수 (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 등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초·중·고 등 교 원 봉급표 적용대 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 교원 봉급표 적용대 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 · 검사		8호봉 이상	7-5호봉	4-2호봉					